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26.

오세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3.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9. 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9.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들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둬으로써

납품업자들의 자금 유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선 주)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상품수령일부터 40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는 한편,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그 지급기한에 차등을 두려는 것임 (안 제8조).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한 후 정산하여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거래 형태인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품판매대금(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 지연에 따른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법률에 규정하였지만,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 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므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

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로,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매장임대차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은 2011년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은 2021년 도입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특약매입거래 등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내용으로, 상품의 납품 시기와 대금의 지급 시기의 간격을 줄여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의 지급,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매마감·정산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납품업자 등의 규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추가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납품업자 등의 규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에 차등을 두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체가 영세한 납품업자와의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업계의 거래관행,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실태 및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대금 지급기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진행 중인 대금 지급기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후 적정 대금 지급기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서일준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